

자산보관.관리보고서

신탁업자: 국민은행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프랭클린템플턴미국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
(채권-재간접형)
- 나.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
- 다.보관.관리기간:11.07.06 ~ 12.07.05
- 라.집합투자업자: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(주)
- 마.투자매매업자.투자중개업자:
SC 은행, 하나대투증권, 한국씨티은행, 부산은행,
외환은행, 교보증권, 미래에셋증권, 한화투자증권,
하나은행, 대구은행, 한국산업은행, 대우증권,
유진투자증권, HMC 투자증권, IBK 투자증권,
HSBC 은행, 기업은행, 동부증권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12.05.03	펀드명변경	프랭클린템플턴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	프랭클린템플턴미국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(채권-재간접형)

- 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| 해당없음
- 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| 해당없음
- 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
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| 해당없음
- 6. 회계감사인의 선임.교체.해임에 관한 사항
| 해당없음

7. 법 제 247조제 5항 각 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| 적합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| 적정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| 해당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| 공정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 | 적정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| 해당없음
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| 해당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| 해당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으며 이 기구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